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544호 2016. 7. 1 (금)

선 결	기관의 장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326호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3
 거창군 조례 제2327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7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205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4
 거창군 규칙 제1206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8

훈 령

거창군 훈령 제396호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51
거창군 훈령 제397호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116

회 람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6년 7월 01일

거창군 조례 제2326호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1)성 명											(한자)
(2) 생년월일(성별)											(3)군번 (군인의 경우)
(4)본국(국적)											
(5)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 급 (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50자 내외)					(12) 공적 분야코드				-		
(13)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7)성 명		①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호수	포 상 연월일	포 상 종 별	포 상 기 관	피 포 상 자				포상을 하계된 공 적 개 요	기 념 품 또는부상	참고
				직위또는 직명 명	소속또는 주 소	성 명	성 별			

※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6 ~ 32
----------	-----------

제출연월일	2016. 5. 3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법령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금지에 따른 서식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요구 서식 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나.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하여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항목 신설

(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과 협의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5. 09. ~ 5. 2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반영함(별지 제4호·제5호서식)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양동인

2016년 7월 01일

거창군 조례 제2327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거창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에 의한다.”를 “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시설”을 “그 시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8조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3조·제35조·제37조·제38조의 각 호 외 본문 중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 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 해당 계획이 수립 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 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3조제1항제19호 본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영 제84조제7항”을 “영 제84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84조제8항”을 “영 제84조제9항”으로 “자연녹지지역내의”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⑤ 영 제84조의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제54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영 제84조제3항”을 “영 제8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5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제55조 본문 중“영 제84조제4항”을 “영 제84조제5항”으로 한다.

제56조 중 “영 제84조제5항”을 “영 제84조제6항제1호”로 한다.

제56조의2 중 “영 제84조제5항제2호”를 “영 제84조제6항제2호”로 한다.

제56조의3 중 “영 제84조제5항제3호”를 “영 제84조제6항제3호”로 한다.

제56조의4 중 “영 제84조제5항제4호”를 “영 제84조제6항제4호”로 한다.

제56조의5 중 “영 제84조제5항제5호”를 “영 제84조제6항5호”로 한다.

제56조의6 중 “영 제84조제5항제6호”를 “영 제84조제6항제6호”로 한다.

제57조 중 “영 제84조제6항”을 “영 제84조제7항”으로 한다.

제61조의2 중 “영 제93조제2항 단서”를 “영 제93조제6항”으로 한다.

제61조의4 중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한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이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 전단”으로 한다.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별표 7, 별표 10, 별표 12, 별표 14, 별표15, 별표 17, 별표 18, 별표 20, 별표 2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에 따라-----

1. -----

2. -----

-----한정한다)
3.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삭 제>

제28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
원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항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생략)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3. (생략)

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자연경관지
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5. (생략)

제35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 ~ 15. (생략)

제28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제13조
제1항에 따라-----

1. ~ 23. (현행과 같음)

제33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1. ~ 15. (현행과 같음)

제35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1. ~ 15. (현행과 같음)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5. (생략)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조망권경관
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
제한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
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
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

1. ~ 15. (현행과 같음)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
진흥지구에서 해당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p>가. 「<u>대기환경보전법</u>」, 「<u>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u>」 또는 「<u>소음·진동관리법</u>」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p> <p>나. 「<u>악취방지법</u>」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p> <p>다. 「<u>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u>」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p> <p>2. <u>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u>: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p> <p>가. <u>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u>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p> <p>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u>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u>로 할 수 있다.</p>
<p>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p> <p>① (생략)</p> <p>1. ~ 18. (생략)</p> <p>19. <u>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u></p> <p>20. ~ 21. (생략)</p> <p>②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p>	<p>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p> <p>① (현행과 같음)</p> <p>1. ~ 18. (현행과 같음)</p> <p>19. -----</p> <p><삭 제></p> <p>20. ~ 21. (현행과 같음)</p> <p>② -----영 제84조제8항</p>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폐율을 60퍼센트 이내로 한다.

- 1. ~ 2. (생략)

<신 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내의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 ④ (생략)

<신 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0퍼센트 이하

- 4. ~ 5. (생략)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

- 1. ~ 2. (현행과 같음)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③ -----제84조제9항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84조의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 1. (현행과 같음)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
60퍼센트--

- 4. ~ 5. (현행과 같음)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 근린 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의2(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의3(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제56조의4(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증축 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의 가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56조의5(녹지지역 등에 있는 한옥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제5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

제56조의2(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

제56조의3(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3호-----

제56조의4(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증축 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

제56조의5(녹지지역 등에 있는 한옥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 3. (생략)

제56조6(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1월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61조의4(임대주택,기숙사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한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1. ~ 3. (현행과 같음)

제56조6(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

제61조의4(임대주택,기숙사 용적률 완화) 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p>건설 시 허용하는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u>한정한다</u>-----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6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제66조(분과위원회) ① ----- -----</p>
<p>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u>제20조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u>에 따른 개발 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p>	<p>1.-----<u>이 조례 제20조 제1항제2호 전단</u>----- -----</p>
<p>2. ~ 3. (생략)</p>	<p>2.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⑤ (생략)</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와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의 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매시장·상점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동호 가목의 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 병원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라목, 바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동호 가목(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은 제외한다), 나목의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기록매체 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두부제조업·세탁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연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이하의 지식산업센터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다.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가목, 사목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설치하는 같은 호 가목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 관련)

※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7층 구역으로 정한 지역은 7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옥외철타를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연장·집회장·전시장, 동·식물원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상점(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가목 중 정신병원·요양소 및 나목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목, 마목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가 세워진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9. 별표 3 제9호 및 제10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사목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아목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와 옥외철타를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동호 다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 다목(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 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를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사격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다만,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9. 별표 3 제9호 및 제10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사목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아목 (주기장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7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0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기계식세차 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2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 연구소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도계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4호 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농가 주택과 기존주택의 기능회복을 위한 증·개축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사목·아목·차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 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 판매시설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 관련)

※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사목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가목의 창고(농·임·축수산업용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및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 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바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액화가스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 도료류 판매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바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후계농업경영인·후계수산업경영인, 전업농업인·전업수산업인 또는 군이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자목(1)에서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6 ~ 33
----------	-----------

제출연월일	2016. 5. 3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및 용도지역 내 입지가능시설 확대 등 규제완화 사항 조례반영으로 토지효율성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 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9조)
- 나. 개발행위허가 취소 조문 삭제(안 제26조)
- 다.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규제 완화(안 제50조제2항, 제54조제2호)
- 라. 생산녹지지역 내 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안 제53조제2항제3호)
- 마.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 건폐율 완화(안 제53조제5항)
- 바. 일반주거지역 내 떡·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 허용(안 별표 3)
- 사.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의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안 별표 18)
- 아. 야영장 시설 입지 가능 용도지역 확대(안 별표 3 ~ 별표 5, 별표 7, 별표 10, 별표 12, 별표 14, 별표 15, 별표 17, 별표 18, 별표 20, 별표 22)
- 자.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 등 변경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6. 3. 29. ~ 4. 19.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6년 7월 01일

거창군 규칙 제1205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호 중 “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방시설사무관”을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서기관·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제5호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중전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7호·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6호·제27호를 제29호·제30호로 하며 제29호(중전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0호(중전 제27호) 중 “감사, 법무통계, 규제개혁”을 “감사 및 규제개혁”으로 한다.

- 5. 공모사업에 관한 업무
- 9. 군정 종합 기획홍보 관련 업무
- 17.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관한 업무
- 18. 포괄보조사업에 관한 업무
- 29. 규제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제6조제39호 중 “주민생활지원 및 사회복지”를 “복지,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으로 한다.

제7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공무원 단체 운영지원 및 공무원 노조에 관한 업무

제7조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업무
3. 노동단체 관리 업무
4. 대부업·저축·금융기관 관리 관련 업무
5. 일자리 발굴 및 추진 관련 업무

제9조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26호까지를 제7호부터 제27호까지로 한다.

6. 실종 등 인적재난 대응에 관한 업무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2호를 제21호로 하고, 제21호(중전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창조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시장거리 활성화 및 유지관리 관련 업무
11.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전략사업, 승강기산업, 투자유치, 상공 관련 업무

제12조제7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제9호를 제7호·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제17호·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6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중전 제16호) 중 “관광, 문화재”를 “관광진흥, 관광시설, 문화재”로 한다.

15.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업무
17. 기획공연·전시 및 대관에 관한 업무
18. 수승대 관리에 관한 업무

제13조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2호를 제23호로 하며 같은 호 중 “산림정책, 산림보호, 공원녹지 및 산림특화”를 “산림조성, 산림보호, 산림휴양 및 공원녹지”로 한다.

22. 자연휴양림·산림욕장·수목원·치유의 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제13조의2 제11호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제1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0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호 중 “녹색성장”을 “자원순환”으로 한다.

18.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업무

제15조제29호 중 “도시건축과”를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농축산과, 농업소득과 및 마을만들기과”를 “농업축산과, 향노화산업과 및 농촌진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농업소득과장”을 “향노화산업과장”으로, “마을만들기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4호·제4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 업무

44. 농업기계화사업 관련 업무

45. 그 밖에 농업축산 관련 업무

제20조제2항 각 호외의 본문 중 “농업소득과장”을 “향노화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8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중전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중전 제6호) 중 “농업재해 피해 업무”를 “농업재해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향노화산업 육성 관련 업무

2. 향노화 힐링 특구 관련 업무

3. 향노화작물 연구개발 관련 업무

7.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관련 업무

32. 그 밖에 향노화산업 관련 업무

제20조제3항 각 호외의 본문 중 “마을만들기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마을만들기”를 “농촌진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6호부터 제31호까지를 제22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2호·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 귀농·귀촌 관련 업무
- 3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업무
- 33. 그 밖에 농촌진흥 관련 업무

제21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2조”를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4조”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주민봉사과”를 “총무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민봉사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3호부터 제26호까지를 제24호부터 제2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7호(종전 제26호) 중 “타 과”를 “다른 과”로 한다.

- 23. 맞춤형 복지허브 관련 업무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실장·과장의 직급) 실장·과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주민생활지원실장은 <u>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u>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3. 행정과장은 <u>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u>으로 보한다. 4. 창조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u>지방시설사무관</u>으로 보한다. 5. (생략) 6. 민원봉사과장은 <u>지방행정사무관</u>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7. ~ 13. (생략) <p>제5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생략)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 7. (생략) 8. <u>거창군 홍보기획 및 군정 종합 기획 홍보 관련 업무</u> 9. ~ 15. (생략)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 <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6. ~ 25 (생략) 26. <u>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업무</u> 27. 그 밖에 기획, 공보, 예산, <u>감사</u>, 법무통계, <u>규제개혁</u>에 관한 업무 <p>제6조(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8. (생략) 39. 그밖에 <u>주민생활지원 및 사회복지</u> 관련 업무 	<p>제4조(실장·과장의 직급)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지방행정사무관</u>----- 3. -----<u>지방행정사무관</u>----- 4. -----<u>지방공업사무관</u>----- 5. (현행과 같음) 6. -----<u>지방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u>----- 7. ~ 13. (현행과 같음) <p>제5조(기획감사실)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현행과 같음) 5. <u>공모사업에 관한 업무</u>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9. <u>군정 종합 기획홍보 관련 업무</u> 10. ~ 16. (현행 제9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17. <u>지역발전특별회계에 관한 업무</u> 18. <u>포괄보조사업에 관한 업무</u> 19. ~ 28 (현행 제16호부터 제25까지와 같음) 29 <u>규제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u> 30-----<u>감사 및 규제개혁</u>----- <p>제6조(주민생활지원실)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8. (현행과 같음) 39. -----<u>복지,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u>---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행정과) 행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 13. (생략)</p> <p><u>14. 공무원 단체 운영지원 및 공무원 노조전담에 관한 업무</u></p> <p>15. ~ 23. (생략)</p>	<p>제7조(행정과) -----</p> <p>1. ~ 13. (현행과 같음)</p> <p><u>14. 공무원단체 운영지원 및 공무원노조에 관한 업무</u></p> <p>15. ~ 23. (현행과 같음)</p>
<p>제7조의2(창조산업과) 창조산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창조도시 추진 전략사업에 관한 업무</p> <p><u>2.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관한 업무</u></p> <p><u>3. 광특화계 포괄보조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u></p> <p><u>4. 지역리더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업무</u></p> <p><u>5. 창조거리조성 사업에 관한 업무</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6. ~ 12. (생략)</p>	<p>제7조의2(창조산업과) -----</p> <p>1. -----</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u>2.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업무</u></p> <p><u>3. 노동단체 관리 업무</u></p> <p><u>4. 대부업·저축·금융기관 관리 관련 업무</u></p> <p><u>5. 일자리 발굴 및 추진 관련 업무</u></p> <p>6. ~ 12.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2(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 5.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6. ~ 26. (생략)</p>	<p>제9조의2(안전총괄과) -----</p> <p>1. ~ 5. (생략)</p> <p><u>6. 실종 등 인적재난 대응에 관한 업무</u></p> <p>7. ~ 27. (현행 제6호부터 제26호까지와 같음)</p>
<p>제10조(승강기경제과) 승강기경제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u>1.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업무</u></p> <p><u>2. 노동단체 관리 업무</u></p> <p><u>3. 대부업·저축·금융기관 관리 관련 업무</u></p> <p><u>4. ~ 11. (생략)</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12. ~ 20. (생략)</p> <p><u>21. 일자리 발굴 및 추진 관련 업무</u></p> <p><u>22. 그 밖에 사회적기업, 승강기밸리, 산업단지, 상공, 투자유치 및 일자리 관련 업무</u></p>	<p>제10조(승강기경제과) -----</p> <p><u>1. 창조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u></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2. ~ 9. (현행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p> <p><u>10. 시장거리 활성화 및 유지관리 관련 업무</u></p> <p><u>11.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관한 사항</u></p> <p>12. ~ 20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u>21. 그 밖에 전략사업, 승강기산업, 투자유치, 상공 관련 업무</u></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 6. (생략)</p> <p>7. 매장문화재 등 비지정문화재 관리에 관한 업무</p> <p>8.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p> <p>9. 관광기본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업무</p> <p>10. ~ 14. (생략)</p> <p>15. 거창한마당축제 관련 업무</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16. 그 밖에 문화예술, <u>관광, 문화재</u>, 수송대관리 및 군립도서관 관련 업무</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2조(문화관광과) -----</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16. -----</p> <p>7. -----</p> <p>8. -----</p> <p>10. ~ 14. (현행과 같음)</p> <p>9. -----</p> <p>15. <u>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업무</u></p> <p>20. -----<u>관광진흥, 관광시설, 문화재</u>, -----</p> <p>17. <u>기획공연·전시 및 대관에 관한 업무</u></p> <p>18. <u>수송대 관리에 관한 업무</u></p>
<p>제13조(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 21. (생략)</p> <p><신 설></p> <p>22. 그 밖에 <u>산림정책, 산림보호, 공원녹지</u> 및 <u>산림특화</u>에 관한 업무</p>	<p>제13조(산림녹지과) -----</p> <p>-----</p> <p>1. ~ 21. (현행과 같음)</p> <p>22. <u>자연휴양림·산림욕장·수목원·치유의 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u></p> <p>23. ----<u>산림조성, 산림보호, 산림휴양</u> 및 <u>공원녹지</u>-----</p>
<p>제13조의2(녹색환경과) 녹색환경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 10. (생략)</p> <p>11. <u>야생동식물</u>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업무</p> <p>12. ~ 17. (생략)</p> <p>18. <u>녹색성장 사무 총괄에 관한 업무</u></p> <p>19. <u>녹색성장 환경분야</u> 관련 업무</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20. 그 밖에 환경정책 수질관리, <u>녹색성장</u>에 관한 업무</p>	<p>제13조의2(녹색환경과) -----</p> <p>-----</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야생생물</u>-----</p> <p>12. ~ 17.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18. <u>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업무</u></p> <p>19.-----<u>자원순환</u>-----</p> <p>----</p>
<p>제15조(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 28. (생략)</p> <p>29. 그 밖에 <u>도시건축과</u> 관련한 업무</p>	<p>제15조(도시건축과) -----</p> <p>-----</p> <p>1. ~ 28. (현행과 같음)</p> <p>29.---<u>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과</u>---</p>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u>농축산과, 농업소득과 및 마을만들기과</u>를 둔다.</p> <p>② <u>농축산과장은</u>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u>농업소득과장은</u>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u>마을만들기과장은</u>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p>	<p>제19조(하부조직) ① ----- ----- ----<u>농업축산과, 향노화산업과 및 농촌진흥과</u>---- ② <u>농업축산과장</u>----- -----<u>향노화산업과장</u>----- -----<u>농촌진흥과장</u>----- -----</p>
<p>제20조(과의 사무분장) ① <u>농축산과장은</u>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 7. (생략)</p> <p><u>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농어촌복합산업자원화) 관련 업무</u></p> <p>9. ~ 21. (생략)</p> <p><u>22. 전업농 육성 관련 업무</u></p> <p><u>23. ~ 44. (생략)</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 <u><신 설></u></p>	<p>제20조(과의 사무분장) ① <u>농업축산과장</u> -----</p> <p>1. ~ 7. (현행과 같음)</p> <p><u>8.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 업무</u></p> <p>9. ~ 21. (현행과 같음)</p> <p><u><삭 제></u> <u>22 ~ 43</u> (현행 제23호부터 제44호까지와 같음)</p> <p><u>44. 농업기계화사업 관련 업무</u></p> <p><u>45. 그 밖에 농업축산 관련 업무</u></p>
<p>② <u>농업소득과장은</u>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 <u><신 설></u> <u><신 설></u></p> <p><u>1. ~ 3. (생략)</u></p> <p><u>4. 논농업 직불제 및 조건불리지역 관련 업무</u></p> <p><u>5. (생략)</u></p> <p><u>6. 농촌일손 돕기 및 농업재해 피해 업무</u></p> <p><u>7. ~ 28. (생략)</u></p> <p><u><신 설></u></p>	<p>② <u>향노화산업과장</u>-----</p> <p><u>1. 향노화산업 육성 관련 사업</u></p> <p><u>2. 향노화 힐링 특구 관련 업무</u></p> <p><u>3. 향노화작물 연구개발 관련 업무</u></p> <p><u>4. ~ 6.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u></p> <p><u>7.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관련 업무</u></p> <p><u>8. (현행 제5호와 같음)</u></p> <p><u>9.-----농업재해 업무</u></p> <p><u>10. ~ 31. (현행 제7호부터 제28호까지와 같음)</u></p> <p><u>32. 그 밖에 향노화산업 관련 업무</u></p>

현 행	개 정 안
<p>③ <u>마을만들기과장</u>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p>1. <u>마을만들기</u>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p> <p>2. ~ 20. (생략)</p> <p>21. <u>귀농안정 정착 대책 및 사후관리</u> 관련 업무</p> <p>22. <u>윈스톱 귀농유치 시책</u> 추진 관련 업무</p> <p>23. <u>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사업</u> 관련 업무</p> <p>24. <u>차별화된 귀농 시책</u> 추진 관련 업무</p> <p>25. <u>소규모 귀농인 마을조성</u> 관련 업무</p> <p>26. ~ 35.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21조(소장 등) ① (생략)</p> <p>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u>지역보건법 시행령</u>」 제12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의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u>농어촌 등 보건의료</u>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p> <p>제24조(읍의 하부조직) ① (생략)</p> <p>② 읍에 <u>주민봉사과</u>, 개발과를 둔다.</p> <p>③ ~ ④ (생략)</p> <p>⑤ <u>주민봉사과장</u>은 다음사무를 분장한다.</p> <p>1. ~ 22.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23. ~ 25. (생략)</p> <p>26. 그 밖에 <u>타과</u>에 속하지 않는 사항 관련 업무</p> <p>⑥ (생략)</p>	<p>③ <u>농촌진흥과장</u>-----</p> <p>1. <u>농촌진흥</u>-----</p> <p>2. ~ 20. (현행과 같음)</p> <p>21. <u>귀농·귀촌</u> 관련 업무</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22. ~ 31. (현행 제26호부터 제35호까지와 같음)</p> <p>32. <u>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u> 관련 업무</p> <p>33. 그 밖에 <u>농촌진흥</u> 관련 업무</p> <p>제21조(소장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지역보건법 시행령</u>」 제14조-----</p> <p>-----</p> <p>-----</p> <p>-----</p> <p>-----</p> <p>제24조(읍의 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총무과</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총무과장</u>-----</p> <p>1. ~ 22. (현행과 같음)</p> <p>23. <u>맞춤형 복지허브</u> 관련 업무</p> <p>24. ~ 26. (현행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와 같음)</p> <p>27. ---<u>다른과</u>-----</p> <p>⑥ (현행과 같음)</p>

[별표 1]

사업소 소장의 직급(제23조 관련)

사업소명	소 장
상하수도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u>지방공업사무관</u>
문화센터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u>지방공업사무관</u>
거창사건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체육청소년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별표 2]

읍·면장의 직급(제28조 관련)

읍·면사무소명	직 급 (복수)	관할구역
거창읍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u>지방사회복지사무관</u>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거창읍 일원
주상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주상면 일원
응양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응양면 일원
고제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고제면 일원
북상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북상면 일원
위천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위천면 일원
마리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마리면 일원
남상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u>지방사회복지사무관</u>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남상면 일원
남하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남하면 일원
신원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u>지방환경사무관</u>	신원면 일원
가조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u>지방사회복지사무관</u>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가조면 일원
가북면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가북면 일원

[별표 3]

부읍·면장의 직급 및 직렬(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 관련)

읍·면사무소명	직급 및 직렬(복수)	비 고
거창읍사무소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u>웅양면, 위천면, 마리면, 남상면, 가조면</u>	<u>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u>	
<u>주상면, 고제면, 북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북면</u>	<u>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u>	

[별표 4]

거창읍 과장의 직급 및 직렬(제29조제4항 관련)

직 위	직급 및 직렬(복수)	비 고
<u>총무과장</u>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개발과장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 또는 <u>지방환경주사</u>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6 ~ 30
----------	-----------

제출연월일	2016. 6. 28.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민선6기 하반기의 신임 군수님의 군정비전 실현을 뒷받침하고, 군정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 조직안정과 여건변화 등에 따른 현행조직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보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업기술센터 하부조직 명칭 변경(안 제19조)

- 농축산과 ⇒ 농업축산과, 농업소득과 ⇒ 향노화산업과,
마을만들기과 ⇒ 농촌진흥과

나. 실과소읍면장의 직렬 변경(안 제4조, 별표 1, 별표 2)

- 주민생활지원실: 서기관, 행정, 사회복지 ⇒ 행정, 사회복지
- 행 정 과: 행정, 방송통신 ⇒ 행정
- 창조산업과: 행정, 시설 ⇒ 행정, 공업
- 민원봉사과: 행정, 보건, 시설 ⇒ 서기관, 행정, 보건, 시설
- 문 화 센 터 : 행정, 사회복지, 공업, 시설 ⇒ 행정, 공업
- 상하수도사업소: 행정, 환경, 시설 ⇒ 행정, 환경, 시설, 공업
- 거 창 읍: 행정, 농업, 환경, 시설 ⇒ 행정, 농업, 사회복지, 시설
- 웅 양 면: 행정, 농업, 시설, 사회복지 ⇒ 행정, 농업, 시설
- 고 제 면: 행정, 농업, 시설, 사회복지 ⇒ 행정, 농업, 시설
- 마 리 면: 행정, 농업, 시설, 사회복지 ⇒ 행정, 농업, 시설
- 남 상 면: 행정, 농업, 환경, 시설 ⇒ 행정, 농업, 사회복지, 시설
- 남 하 면: 행정, 농업, 시설, 사회복지 ⇒ 행정, 농업, 시설
- 신 원 면: 행정, 농업, 시설, 사회복지 ⇒ 행정, 농업, 시설, 환경
- 가 조 면: 행정, 농업, 환경, 시설 ⇒ 행정, 농업, 환경, 사회복지

다. 부면장의 직렬 변경(안 별표 3)

- 주상면, 고제면, 북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북면
: 행정, 세무, 사회복지, 농업 ⇒ 행정, 사회복지, 농업

라. 거창읍의 하부조직 명칭 변경(안 제29조)

- 주민봉사과 ⇒ 총무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8조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생략(「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양 동 인

2016년 7월 01일

거창군 규칙 제1206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6 ~ 32
----------	-----------

제출연월일	2016. 6. 28.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행정기구 개편과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4~5급 직렬 변경

○ 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 서기관·행정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나. 5급 직렬 변경

- 행정 : 본청(1명→2명)
- 행정·사회복지: 본청(0명→1명)
- 행정·공업 : 본청(1명→2명), 사업소(0명→1명)
- 행정·시설·농업: 의회사무과(0명→1명), 면(0명→4명)
-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의회사무과(1명→0명), 읍(0명→1명), 면(7명→3명)

다. 6급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변경

- 직속기관: 23명 → 21명(감2)
(농업기술센터:10명 → 9명, 보건소: 13명 → 12명)
- 사 업 소: 10명 → 11명(증1)
- 읍 : 9명 → 10명(증1)

라. 7급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변경

- 본 청: 96명 → 88명(감8)
- 직속기관: 33명 → 38명(증5)
(농업기술센터: 12명 → 17명)
- 사 업 소: 14명 → 17명(증3)
- 읍 : 9명 → 10명(증1)
- 면 : 37명 → 39명(증2)

마. 8급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변경

- 정 원: 152명 → 153명(증1)
- 분 청: 64명 → 61명(감3)
- 사 업 소: 12 → 13명(증1)
- 면 : 30명 → 33명(증3)

바. 9급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변경

- 분 청: 30명 → 29명(감1)
- 직속기관: 5명 → 8명(증3)
(농업기술센터: 4명 → 6명, 보건소: 1명 → 2명)
- 읍 : 9명 → 10명(증1)
- 면 : 25명 → 22명(감3)

사. 연구직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변경

- 정 원: 6명 → 5명(감1)
- 분 청: 1명 → 2명(증1)
- 직속기관: 3명 → 2명(감1)
- 사 업 소: 2명 → 1명(감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30조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5조
-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생략(「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창군수양등인

2016년 7월 01일

거창군 훈령 제396호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법무통계, 규제개혁담당”을 “규제개혁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자치, 공무원단체”을 “서무, 주민자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창조전략, 향노화산업, 평생교육”을 “창조산업, 교육진흥,
평생학습”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위생담당”을 “위생, 지적재조사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생활민방위, 안전재난상황실담당”을 “민방위관제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사회적기업, 승강기밸리, 투자유치, 상공, 일자리담당”을 “전략
사업, 기업지원, 승강기산업, 투자유치, 상공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관광”을 “관광진흥, 관광시설”로 “수승대관리”를 “수승대”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산지소득”을 “산림휴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환경관리, 환경정비”를 “환경정책, 자원순환”으로 “녹색성장
담당”을 “자연환경담당”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농축산과”를 “농업축산과”로 “농기계관리담당”을 “농기계
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농업소득과에”를 “향노화산업과에 향노화산업”
으로 “친환경농업, 농업기술담당”을 “친환경연구개발, 기술보급담당”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마을만들기과에 마을정책, 마케팅, 귀농귀촌, 식품가공”을 “농촌
진흥과에 농촌진흥, 농촌개발, 농산수출유통, 농산가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방문보건, 진료담당”을 “건강지원, 보건민원담당”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복합문화담당”을 “박물관담당”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1호가목 중 “주민봉사과”를 “총무과”로 “주민가족,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주민, 복지지원, 복지허브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을 “복지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천, 가조면에 총무, 복지허브, 개발, 산업경제담당을 둔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본청 실·과에 두는 담당은 다음과 같다.</p> <p>1. 기획감사실에 기획, 공보, 예산, 감사, 법무통계, 규제개혁담당을 둔다.</p> <p>2. (생략)</p> <p>3. 행정과에 행정, <u>주민자치, 공무원단체, 정보화담당</u>을 둔다.</p> <p>4. 창조산업과에 <u>창조전략, 향노화산업, 평생교육</u>, 에너지담당을 둔다.</p> <p>5. (생략)</p> <p>6. 민원봉사과에 민원, 지적, 토지정보, <u>위생담당</u>을 둔다.</p> <p>7. 안전총괄과에 안전관리, 복구지원, 안전점검, 교통, <u>생활민방위, 안전재난 상황실담당</u>을 둔다.</p> <p>8. 승강기경제과에 <u>사회적기업, 승강기밸리, 투자유치, 상공, 일자리담당</u>을 둔다.</p> <p>9.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 <u>관광, 문화재, 수송대관리</u>, 도서관담당을 둔다.</p> <p>10. 산림녹지과에 산림조성, 산림보호, <u>산지소득, 공원녹지담당</u>을 둔다.</p> <p>11. 녹색환경과에 <u>환경관리, 환경정비, 수질관리, 녹색성장담당</u>을 둔다.</p> <p>12. ~ 13. (생략)</p> <p>② 직속기관에 두는 담당은 다음과 같다.</p> <p>1. 농업기술센터</p> <p>가. <u>농축산과</u>에 농정, 농업지원, 축산내수면, 가축위생, <u>농기계관리담당</u>을 둔다.</p> <p>나. <u>농업소득과</u>에 식량작물, 원예특작, 과수, <u>친환경농업, 농업기술담당</u>을 둔다.</p> <p>다. <u>마을만들기과</u>에 <u>마을정책, 마케팅, 귀농귀촌, 식품가공, 로컬푸드담당</u>을 둔다.</p> <p>2. 보건소에 보건행정, 건강증진, 예방의약, <u>방문보건, 진료담당</u>을 둔다.</p>	<p>제3조(구성) ① ----- -----</p> <p>1.----- <u>규제개혁담당</u>-----</p> <p>2. (현행과 같음)</p> <p>3.-----<u>서무, 주민자치</u> -----</p> <p>4. -----<u>창조산업, 교육진흥, 평생 학습</u>-----</p> <p>5. (현행과 같음)</p> <p>6.----- <u>위생, 지적재조사담당</u>-----</p> <p>7.----- -----<u>민방위관제담당</u>----- -----</p> <p>8. -----<u>전략사업, 기업지원, 승강기 산업, 투자유치, 상공담당</u>-----</p> <p>9.-----<u>관광진흥, 관광시설--수송대</u>-----</p> <p>10. ----- <u>산림휴양</u>-----</p> <p>11.-----<u>환경정책, 자원순환</u> -----<u>자연환경담당</u>-----</p> <p>12. ~ 13. (현행과 같음)</p> <p>② -----</p> <p>1.-----</p> <p>가. <u>농업축산과</u>----- -----<u>농기계담당</u>-----</p> <p>나. <u>향노화산업과</u>에 <u>향노화산업--친환경연구개발, 기술보급담당</u>----</p> <p>다. <u>농촌진흥과</u>에 <u>농촌진흥, 농촌개발, 농산수출유통, 농산가공</u>-----</p> <p>2.----- ----<u>건강지원, 보건민원담당</u>----</p>

현 행	개 정 안
<p>③ 사업소에 두는 담당은 다음과 같다.</p> <p>1. 문화센터에는 문화공연, <u>복합문화담당</u>을 둔다.</p> <p>2. ~ 4. (생략)</p> <p>④ 읍면에 두는 담당은 다음과 같다.</p> <p>1. 거창읍</p> <p>가. <u>주민봉사과</u>에 총무, 세무, <u>주민가족, 주민생활지원담당</u>을 둔다.</p> <p>나. 개발과에 산업경제, 건설, 환경담당을 둔다.</p> <p>2. 주상, 웅양, 고제, 북상, 위천, 마리, 남상, 남하, 신원, 가조, 가북면에 총무, <u>주민생활지원, 개발, 산업경제담당</u>을 둔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③ (현행과 같음)</p> <p>1. -----<u>박물관담당</u>-----</p> <p>④-----</p> <p>1.-----</p> <p>가. <u>총무과</u>-----<u>주민, 복지지원, 복지허브담당</u>-----</p> <p>나.-----</p> <p>2.-----</p> <p>-----</p> <p><u>복지지원</u>-----</p> <p>-----</p> <p>3. 위천, 가조면에 <u>총무, 복지허브, 개발, 산업경제담당</u>을 둔다.</p>

[별표] (제8조 관련)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기획 감사 실	기 획	1. 군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통제
		2. 군정 주요시책 개발
		3. 중·장기 계획수립 및 조정
		4. 기본운영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5. 군정업무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제 실시
		6. 현안사업 관리
		7. 지시사항 종합관리
		8. 공약사업 종합관리
		9. 군민 및 공직자 제안제도 운영
		10. 군정조정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11. 간부회의 운영
		12. 각종 위원회 관리
		13. 중앙·도·타지방자치단체 등 대외업무 벤치마킹 및 파급
		14. 자치단체간 업무협의
		15. 군 의회 관련업무 총괄 및 도의회 운영 협력 및 지원
		16. 종합대책 수립운영(설, 추석, 동절기)
		17. 군정백서 제작
		18. 창의혁신 및 행정내부 혁신
		19. 지방분권 및 분권이양
		20. 공모사업 총괄관리
		21. 지역행복생활권발전계획 수립
		22.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23. 경남지역균형발전사업 총괄
		24. 경남미래 50년 사업
		25. 거창군 발전협의회 운영
		26. 인구증가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7. 내고장 주소갯기운동 추진
		28. 실내 일반서무 및 예산회계 업무
공 보	공 보	29. 군정홍보 종합기획 조정
		30. 국·도정 시책홍보
		31. 각종 홍보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 홍보 매체물 관리
		32. 각종 언론사와의 홍보 협조체제 유지
		33. 공보제작 및 등록, 정기 간행물 관리
		34. 전시 공보 실시계획 수립·시행
		35. 브리핑룸 관리운영
		36. 각종 홍보영상기록물 제작 관리
		37. 난시청 해소사업
		38.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 운영
		39. 군정 홍보사진 촬영·게시·관리 및 보도차량 운행관리
		40. 광고탑 및 매체이용 광고
		41. 지역진흥재단 관련업무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기획 감사 실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42. 예산편성 및 운용 총괄 43.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운영 44. 지방재정확충 총괄 45. 지방교부세, 국고보조, 광특사업관리 46. 도비 보조사업 관리 47.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및 분석 48.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49.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50. 지방재정공시제 운영 51. 지방재정 분석 52. 지방채운용 총괄 53. 기금운용 총괄 54. 예비비 관리 55. 전시예산 편성 및 운영 56. 경영수익사업 지도·운영 57.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58. 자체 발간실 운영 59.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지도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계획수립 및 총괄 61. 감사계획의 수립·시행 62.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기동감사 63. 상급기관감사 수감처리 64. 국가기강업무(부분감사) 및 기동감찰 65. 공무원 기강 및 비위조사 66. 비위관련 동향 및 언론보도사항 조사 67. 상급기관 이첩 및 민원조사 68.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69. 공직자윤리업무(재산등록) 추진 70. 대형공사 설계사전심사, 일상감사 71.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72. 면책심사위원회 운영 73. 계약심사업무 추진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기획감사실	규제개혁	74.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75.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76.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77.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개선 78.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79. 지방규제 신고고객 보호제도 운영 80.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81.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82.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83. 인·허가부서 대상 특별·전문교육 지원 84. 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 운영 85. 지방규제 지수 운영 86.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개최 87. 조례·규칙 사전심사 및 공포 88.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89. 조례 의회상정·사전보고 및 재의요구 90. 훈령, 예규 등 중요문서 사전심사 91. 소송 및 행정심판 조정·통제 92.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93. 고문변호사 운영 94. 행정법규 상담 95. 행정절차제도업무 총괄 96. 군정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 수집 관리 97. 각종 통계조사 98. 통계연보 및 행정지도 발간 99. 외국인 통계 및 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주민생활지원실	복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2.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3.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 등) 4. 과내 일반사무 및 예산회계 업무 5. 장애인 등록 업무 6.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7. 장애인 자동차 등록 및 지원·관리 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9.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10. 장애인 재활 및 기능습득 교육 11. 그 밖에 장애인 관련 업무 12.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관리 13.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4. 거창군 재가복지센터 운영 지원
	복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 그 밖에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초생활보장 조사 17. 장애인복지지원 조사 18. 한부모가족지원 조사 19. 차상위계층 조사(자활,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20. 희귀·난치성 질환자 조사 21. 조사관련 이의신청 처리 22. 복지대상자 변동 사후관리 2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24. 상담실 관리
	노인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 노인복지계획 수립·시행 26. 노인복지관련시설 설치 및 관리 27. 장기요양기관 설치(지정) 및 관리 28. 장기요양보험이용 및 입소 결정 29.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30. 노인일자리 제공 사업 31.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32. 구직희망노인 취업교육사업 33. 무료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 배달사업 34. 노인회 운영 지원 및 육성·관리 35. 노인복지관련 급여지급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주민생활지원실	노인복지 기초생활 희망복지	36. 노인복지기금 관리 및 운용 37. 노인관련 행사 지원 38. 장사등에 관한 업무 전반 39. 삶의 쉼터 운영 및 지원관리 40. 경로당 신규 설치 및 보수 41.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전반 4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43. 생활안정기금 운용 및 관리 44.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 45. 차상위계층 지원 46. 노숙자·부랑인 관련 업무 47. 자활지원사업 총괄 48.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지도·관리 49.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50. 의료급여대상자 선정 및 관리 51.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 52. 민관협력사업 53. 취약계층 이웃돕기, 공동모금회 등 연계지원 54. 긴급복지 지원사업 55. 기부식품 제공사업 56. 거창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57. 자원봉사단체 관리 및 육성 58. 자원봉사관련 업무 전반 59. 보건복지 콜센터 운영 60. 복지대상자 모니터 및 사례관리 관련 읍면 지도 감독 61. 복지대상자 사례관리 62. 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63. 방문형 서비스 사후관리 총괄 64. 복지자원 개발 및 배분, 관리 65.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 67. 여성정책 및 복지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 68.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69.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상담소 운영 70. 여성 권익신장 및 역량강화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주민생활지원실	여성아동	71.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및 센터 운영 72.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73. 보육시설 종사자 및 지도 점검 74. 정부지원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75. 아동급식지원대상자 조사 및 지원 76. 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 및 운영 77. 어린이 놀이터 설치 및 관리 78.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79. 저출산 대책 80. 드림스타트 사업 81. 재활용품매장 및 여성의 방 운영 지원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행정과	행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열린 군수실 운영 2. 열린 군수실 방문민원 종합 관리·운영 3.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관한 사항 4. 군정 주요일정(일일 및 주간) 관리 5. 과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운영에 관한 사항 6. 군정 주요행사의 의전에 관한 사항 7. 과내 일반사무 및 예산 회계업무 8. 소청에 관한 사항 9. 합리적인 인사관리시스템 개발구축 10. 공무원의 임용·징계 및 인사(징계)위원회 운영 11. 표창 및 군민상 시상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직제기구 및 정·현원 관리 등 조직관리·운영 13. 공무원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제도 운영 14. 공무원 근무성적·경력평정 15.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관리 16. 공무원 충원 및 각종 시험관리 업무 17. 공무원 호봉관리에 관한 사항 18. 승진후보대상자 다면평가 및 직위공모제 운영 19. 공무원증 및 재직·경력 증명서 발급 20. 인사·조직관련 조례·규칙·규정 제·개정 21. 부서별 세부 사무분장 22. 인사기록관리 및 공무원 인사관리프로그램 운영 23. 청원경찰 채용 24.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정·현원 관리 25. 그 밖에 인사·조직관리 업무 총괄 26. 공무원 직장보수교육 및 소양교육 27. 공무원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28. 사무전결규정 및 읍·면사무위임 29. 군수·부군수 사무인수·인계 30. 민주화 보상업무 3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보상업무 32. 군민의 날 행사 종합계획 수립·시행 33. 중앙부처 및 도 행정과 소관 국·도정 주요시책 추진 34. 여론·동향관리 및 읍면순방 관련업무 35. 탈북 주민관리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행정과	행정	36. 군민화합 및 선진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시책 추진 37. 전시 주민 및 차량통제 실시계획 수립·시행 38. 전시 지방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39. 선거 및 주민투표 관련 사항 40. 공무원 국외여행 및 해외 배낭여행 운영 41. 행정서비스현장 42. 공무원 결속강화 훈련 운영 43. 정부3.0 업무
	사무	44. 보안 및 비밀에 관한 사항 45. 청사방호 46. 공무원 본인 및 자녀 장학금 지원 47. 청사 주차관리 및 안내 48. 행정사 신고 수리 49. 공인관리 50. 문서수발 및 통제, 문서채송, 우편물 관리 51. 기록관 운영계획 수립 추진 52. 기록물 보존, 이관, 폐기 업무 53. 생산의무 부가 기록물 현황관리 54. 기록물 평가심의회 운영 55. 기록물 분류기준표 운영 56. 당직 및 비상소집 관리 57. 경축식, 기념식, 조회 등 의식행사 58. 전시 자체충무계획 수립·시행 59. 공무원 복무관리 60.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61. 공무원 노조 관련 업무 62. 공무원 보수관리(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63. 공무원 연금 및 공제회 대부금 관리 64.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업무 65.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상조회, 동호회 휴양시설 등) 66. 후생위원회 운영 67. 행정자료실 관리 68. 교환실, 팩스실 운영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행정과	정보화	102. 소프트웨어 중복 개발 심의 조정 103. 정보화마을 구축 및 활성화 104. 군민 정보화 교육 및 정보이용시설 관리 105. 정보통신 보안업무 및 보안시스템 운영 관리 106.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관리 업무 107. 국가정보 통신망(네트워크) 운영 108. 행정전화망(인터넷전화교환기) 운영 109. 공공건물 통신공사 감독업무 110.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 설계검토 및 사용전 검사 111. 청사내 행정방송 및 TV유선시설 유지관리 업무 112.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113.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114. 행정정보 공동 이용 권한 관리 115. 거창군 블로그기자단 등 SNS 운영관리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창조산업과	창조산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조경제에 관한 종합계획 조정 2. 창조경제활성화 대책 추진 3.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총괄기획 4.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5. 인증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6. 사회적일자리사업 추진 7.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운영 8. 지역일자리공시제 시행 9. 노정, 노동단체 지도 및 관리 10. 저축 및 금융기관 지도, 감독 11. 대부업 관리 12. 고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3.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14. 실업대책 추진 15. 자체 일자리사업 발굴·추진 16.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17. 취업박람회 개최 18.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19. 직업소개소 운영 20.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사업 21.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22. 취업상담사 운영 23. 농산업 인력관리 업무 추진 24.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25. 지역일자리센터 운영 26. 구인·구직등록 관리 27. 공공·희망 근로사업 추진 28.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29. 마을기업 지원사업 추진 30. 과내 일반사무 및 예산회계 업무
	교육진흥	<ol style="list-style-type: none"> 31. 교육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2.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 33. 초·중·고·대학 육성지원 34. 교육환경 개선사업 35. 거창군 장학회 운영 36. 거창교육발전특별위원회 운영 37.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운영 38. 세자녀 가정 및 전입세대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39.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원 40. 서민자녀 교육지원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창조산업과	평생학습	41.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42. 평생학습센터 운영 43.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44.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45.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 46. 평생학습축제 개최
	에너지	47. 에너지 자립도시 만들기 종합기획, 추진 48.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 49. 석유판매업 등록 및 지도점검 50. 가스시설 허가 및 지도점검 51. 신재생(청정) 에너지 보급 지원(육성) 52. 에너지 도시 자매결연 추진 53. 녹색발전소 및 에너지 자립마을 발굴 육성 54. 에너지 자립 실천운동 및 교육 55. 광업권 관리 및 지도·점검 56. 전기사업 인·허가 및 지도·감독 57.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재 무 과	경 리	36. 복식부기 계정별 원장 및 시산표 수정·검토
		37. 복식부기 결산보정분개
		38. 복식부기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
		39. 복식부기시스템 운영
		40.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41. 복식부기 자산·부채 실사 및 평가
		42. 월별 세금계산서 관리
	세입관리	43. 지방세 징수
		44. 세외수입 부과·징수 지도 및 총괄관리
		45. 세외수입 체납 총괄 관리 및 징수
		46. 국세 위탁징수
		47. 체납세징수, 처분 및 가산금 조정
		48. 지방세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
		49. 세입금 관리 및 결산
		50. 과·오납금 반환
		51. 지방세 결손 처분
		52. 자금배정 및 자금운영
		53. 국·도비 보조금 세입관리
		54. 징수관련 공인관리
		55. 수입증지 출납관리
		56. 군 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 지정·검사
		57. 기부금품 모집허가 관련업무
		58. 채권총괄 관리
	재산관리	59. 국·공유재산 총괄관리
		60.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취득·처분·대부·사용허가
		61. 은닉 국·공유재산 색출 및 처리
		62.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63.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인수
		64.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65. 국·공유재산 결산
		66. 지방재정공제회 관련업무
		67. 청사 유지관리
		68. 관사 유지관리
		69. 공용차량의 총괄관리
		70. 유류 구매단가 계약
		71. 물품관리·구매·출납·보관·처분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재 무 과	부동산평가	72. 개별주택특성조사 73.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74.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열람 75.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처리 76. 표준주택조사 지원 및 관리 77. 공동주택조사 지원 및 관리 78.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79.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부과·결정 80. 건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81. 차량·기계장비 시가표준액 결정 82. 재산조회 83. 과표 관련 제도 개선 84. 종합부동산세 과세 지원 85. 개별주택가격관리시스템(KLIS) 운영 관리 86.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87. 개별공시지가 검증 88. 지가의 결정·공시 및 열람 89.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 90. 개발부담금 운영 91.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관리 92. 인근지 시·군과의 지가균형 협의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민 원 봉 사 과	토지정보	37. 도로명주소의 유지관리 38. 도로망 및 도로구간의 설정 39. 도로명 부여·변경·폐지 40.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41.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42.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43.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44.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45.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관리 46. 주소일괄변경신청 접수 및 처리 47. 도로명주소 대장관리 및 발급 48. 도로명주소 자료제공 49.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관리 50. 국가기초구역 설정·관리 51. 국가지점번호제도 추진 52. 공간정보 구축·관리 53. 공간정보 보안관리 54. 토지행정 관련시스템 운영관리 55. 연속·편집지적도면 정리 및 관리 56. 연속·편집지적도면 자료제공 57. 지형지물변동자료 조사 및 보고 58. 지명위원회 관리 59. 외국인토지 관리 업무 60.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 및 관리 61.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62.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 및 검인 63.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조사 및 처분 64. 식품접객업소 허가(신고) 관리 65. 공중위생업소 신고 관리 66. 식품제조가공업소 신고 관리 67. 식품 소분·운반·판매업소 신고 관리 68. 조리사 및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69. 집단급식소 지도관리 70.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관리용역업소 지도관리 71. 음식문화 개선사업(모범음식점 관리 포함)
	위 생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민 원 봉 사 과	위 생	7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신고 관리 73. 건강기능식품 신고 관리 74. 유통식품관리 및 위해식품 공표·회수 관리 7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제도 관리 운영 76. 유전자재조합(GMO) 식품 유통관리 7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78. 식중독예방 관련 업무 79.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 80.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81.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 82. 1399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운영
	지적재조사	83. 식품수입판매업 신고 관리 84.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수립 85. 지적재조사사업 연도별 실시계획 수립 86.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선정 및 고시 87.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88.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89.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행자 선정 및 심의 90. 지적재조사 확정측량 성과검사 91. 지적재조사 경계조정 및 확정 92. 경계결정 및 확정에 따른 조정 협의 93. 조정금 산정 지급·징수 및 공탁 94. 경계확정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95.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권한관리 및 운영 96. 세계측지계변환 실시계획 수립 97. 세계측지계변환 대행자 선정 98. 세계측지계변환 지구선정 및 승인신청 99. 사업지구별 공통점 선정 및 성과검사 100. 좌표변환 성과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 101. 지적공부 도해지역 수치화사업 추진 102. 도해지역 수치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103. 수치화측량 성과검사 및 정리 104. 측량성과심의회 구성 및 운영 105.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106. 그 밖의 지적재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안 전 총 괄 과	안전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3.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4.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5.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관리 6. 지역내 재난안전수준 진단·위험요소 발굴 7. 재난대비·대응 교육 및 훈련 8. 사회적재난 대응총괄 및 활동계획 수립 9. 안전문화운동 종합관리 및 홍보 10. 국가재난관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1. 재난 현장지휘소 운영 12. 재난 및 국가기반분야 매뉴얼 통합 관리 (자연재난, 사회적재난, 인적재난) 13. 국가방재자원 통합관리 지원 14.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지원 15.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 16.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작성 및 관리 17. 물놀이안전 종합관리 및 홍보 18.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업무 19. 재난관리기금운영 및 사업 추진 20. 소방업무 지원 21. 실종자 수색에 관한 업무
	복구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22. 과내 일반서무 및 예산회계 업무 23. 재해 복구계획 수립 및 총괄 24. 풍수해 보험에 관한 업무 25.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 추진 26.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심의 및 위원회 운영 27. 수방자재 확보·비축 및 관리 총괄 28. 홍수통제에 관한 업무 29.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및 점검 30. 침수흔적도 및 재해지도 조사작성 31. 우수유출 저감 종합대책 수립 32. 우수저류지 조성 및 유지관리 33.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관리 및 사업 추진 총괄 34.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지정관리 및 사업 추진 총괄 35. 자연재난의 사전대비·대응 및 수습 총괄 36. 자연재난 상황관리계획 수립·시행 37. 재난 현장모니터요원 위촉 및 운영 관리 3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 39. 내 집 앞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업무 40. 그 밖에 재해예방 및 복구관련 사업추진 총괄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안전 총 괄 과	안전점검	41.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총괄 42. 재난안전관련 정보수집, 분석, 전파 및 예방대책 추진 43.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 및 안전점검 4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45. 재난취약시설 특별점검 46. 축제·행사등 안전점검 및 관리 47.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및 관리 48. 재해대처계획 심의(공연법 관련) 49. 가로등 신설 및 관리업무 50. 가로등 고장신고·수리 기동대 운영 51. 저소득층 가구 전기안전점검 지원 52. 유도선장 관리
	교통	53.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54. 화물자동차운수사업체 지도·관리 55. 화물자동차 적재물 배상보험 관리 56.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버스, 택시, 특수여객) 지도·관리 57.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지도·관리 58. 교통안전계획 수립 59.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60.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61.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 및 징수 62. 자동차관리사업체(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지도·관리 63. 자동차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64. 이륜자동차 관리 65.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 66. 무단방치 차량 처리 67. 전시교통실시계획 수립 시행 68. 여객터미널 관리 69. 여객운수사업체 재정 지원 70. 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 71. 교통관련 사법업무 처리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안전총괄과	민방위관제	72. 민방위협의회 운영 73. 인력동원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74.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 관리 75. 민방위 교육에 관한 업무 76. 민방위 훈련에 관한 업무 77. 민방위대 동원에 관한 사항 78. 민방위대 주요시설의 보호 및 장비의 유지·관리 79.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및 운영 80. 비상급수시설 관리 81. 비상대피시설 관리 82.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3. 지역방위 지원에 관한 사항 84. 정부연습의 계획 및 실시 85. 비상대비업무의 조정·통제 86. 전시인력동원 계획에 관한 사항 88. 중점자원 확인의 날 운영 89. 주민신고에 관한 사항 90.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총괄 91.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92. CCTV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3. 재난종합상황실 관리 94. 재해 관측 및 예·경보시스템 유지 관리 95. 재난마을방송 시스템 유지관리 96. 120 자원봉사대 운영 97. 사랑의 집짓기 업무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승강기 경제 과	전략사업	1. 군의 전략적 사업 관장 및 추진
		2. 군의 현안 및 역점사업중 특별히 지정하는 사업
		3. 그 외 군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4. 과내 일반사무 및 예산회계 업무
	기업지원	5.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
		6. 입주기업 지원
		7. 창업보육센터 육성
		8.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9. 기업규제완화 업무
		10.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11. 기업애로 해소
		12. 중소기업 창업 및 지원
		13.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14.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관리
		15. 산업단지 지원시설 설치 및 보상협의
		16. 산업단지 분양 및 예산 확보·정산
	승강기산업	17. 거창승강기R&D센터 활성화 추진
		18. 승강기기업체 지원시설 건립 및 지원
		19. 승강기 EXPO 개최 및 안전체험관 건립·지원
		20. 승강기산업 관련업체 유치 및 입주지원
		21. 승강기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학회 유치 및 지원
		22. 승강기기업체 맞춤형 인력육성 지원
		23. 승강기전문산업단지 조성
		24. 승강기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산 확보·정산 및 분양
		25. 승강기 마케팅 지원
		26. 한국승강기대학교 육성 및 지원
		27. 그 밖에 승강기산업 관련사항
	투자유치	28. 투자유치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9. 외자 및 국내 기업유치 활동
		30. 개별입주 기업체 공장부지 알선
		31. 투자유치 홍보
		32. 투자프로젝트 공모사업 발굴 및 개발
		33. 투자유치 설명회 기획 및 참석
		34.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운영 지원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승강기 경제 과	상 공	35. 상공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36. 전통시장 육성 및 관리 37. 시장거리 특화사업 및 유지관리 38.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업무 39. 공산품 품질표시 지도 및 점검 40. 물가 종합대책 수립 및 지도 41. 공예품 육성 및 QC상품 관리 42. 계량기 검사 및 단속 43. 담배판매업 신고 및 지도·감독 44. 전시 산업자원 동원 실시계획 수립·시행 45. 통신·방문·전화권유 등 특수판매업 신고수리 46. 승강기 안전점검 47. 통상진흥 업무 추진 48. 공산품 등 판로개척 및 수출알선 지도 49. 대외무역업자 알선·관리 및 운영 50. 지역 공산품 마케팅 및 사이버 상거래 지원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문화관광과	관광시설	36.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37. 관광개발 관련 국내외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38. 소규모 관광시설 정비사업 39. 온천지구 지정 및 개발 관리 40. 관광시설 및 온천개발등 관광 Hardware에 관한 업무 41. 가야문화권 유·무형 역사 문화자산 자원개발 42.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43. 신라촌 조성사업 44. 천문우주문화도시 조성사업 및 관광루트 개발 45. 그 밖에 관광시설에 관한 업무
	문화재	46. 지정문화재 전승 및 보수 관리 47. 전통사찰 보수 및 관리 지원 48. 지정문화재 영향검토 및 현상변경 등 허가 49. 문화재 지정 및 해제 신청 50. 지정문화재 안전점검 51. 천연기념물 관리 52. 매장문화재 보호 관리 53.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시·발굴 54. 비지정향토문화재 보수 지원 55. 문화재 매매업 허가 및 관리 56. 문화재 활용사업
	수승대	57. 수승대 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58. 수승대 시설사용료 징수관리 59. 수승대 관광객 안전관리 60. 수승대 썰매장 이용객 안전관리 61. 수승대 간이수영장 관리 62. 수승대 주변 자연경관보호 및 관광자원 관리 63. 수승대 오·폐수처리장 관리 64. 수승대 조경수 관리 65. 수승대 주차장·야영장 관리 66. 수승대 소규모수도시설(양수장·배수지) 관리 67. 수승대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문화관광과	도서관	68. 도서관 운영계획 및 종합조정 69.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70. 도서관 문화강좌 운영 및 전시회 개최 71.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운영 72. 도서 관리(수서, 구입, 장비작업, 배가, 폐기 등) 73. 도서관 회원 관리 74. 도서관리시스템 및 전산장비 관리 75. 도서관 시설 유지관리 76. 도서관 시설물 대관 77. 도서관 각 자료실 및 자유열람실 운영 관리 78. 도서 열람 및 대출관리 79. 공공도서관 지원 및 등록 80. 작은도서관 지원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산림녹지과	산림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림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산림 기본통계 및 생산통계 3. 양묘 사업 4. 산림보호구역 지정관리 5. 임업진흥권역 관리 6. 산지전산망 구축(GIS) 7. 임업경영인 및 임업후계자 육성지도 8. 보전임지 지정관리 9. 임업기술지도 10. 임업기관 단체 육성, 산림작업단 관리 지도 11. 산지이용 구분조사 12. 조림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13. 풀베기, 덩굴류 사업 14. 사방사업 계획수립 및 지정관리 15. 산사태 예방 및 복구(산림재해) 16. 푸른숲 선도원 지도육성 17. 산림조합 육성지도 1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기금 용자 19. 균유임야 관리 20. 밤나무 작업로 시설 및 지도 21. 산림복합 경영사업 22. 표고재배시설 사업 23. 산림 부산물 생산지도 및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사업 24. 토석채취 허가·단속 및 사후관리 25. 전시 산림계획 수립·시행 26. 산림특화작목 육성 27. 산지이용개발 종합계획 수립 28. 임·특산물 유통망 구축 29. 산지이용 소득창출관련 사업추진 30. 산지자원활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1. 향노화 임산물 생산관련 사업 32. 화강석특화사업 총괄관리 및 평가업무 33. 화강석사업 홍보 34. 화강석 지역협력단 운영 35. 지역특화발전 특구 업무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산림녹지과	산림조성	36.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	
		37.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	
		38. 거창화강석 상징조형물 관리	
		산림보호	39. 과내 일반사무 및 예산회계 업무
			40. 산불예방 및 진화
			41. 입목 벌채허가·신고
			42. 수목 굴취에 관한 사항
			43. 산림 내 불법 건조물 사후관리
			44. 산지전용 허가, 변경, 협의, 신고 및 관리
			45. 산림개발기금 수납업무
	46. 산림형질변경지 단속 및 사후관리		
	47. 산림보호 단속		
	48. 산림사범에 관한 사항		
	49. 숲사랑 지도원 육성관리		
	50. 산림병해충에 관한 사항		
	51. 밤나무 항공방제에 관한 사항		
	52. 백두대간 지정에 관한 사항		
	53. 백두대간 복원에 관한 사항		
	54. 임도시설 기본계획 수립		
	55. 임도시설 및 보수 유지관리		
	56. 영림계획 인가·변경		
	57. 영림계획 사업신고		
	58. 보호수 및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관리		
	59. 백두대간 소득사업에 관한 사항		
	60. 제재소 및 임산물 가공업무에 관한 사항		
	61. 산지정화 활동		
	산림휴양	62.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운영	
		63. 산림레포츠파크 조성 및 운영	
		64. 산촌종합개발사업	
	공원녹지	65. 자연휴양림·산림욕장·수목원·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	
66. 산림분야 항노화 휴양시설 사업에 관한 업무			
67. 숲가꾸기 정비사업			
68. 푸른 거창 가꾸기 사업(그린경남 및 생활주변 나무심기)			
69.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			
70.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산림녹지과	공원녹지	71. 꽃길·꽃동산 조성 및 관리 72. 등산로 관리 73. 자연공원·생활공원 조성 및 관리 74.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75. 도시공원법 단속 76.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 77. 녹지공원 관련 보상 78. 산림 내 편의시설 개발에 관한사항 79. 마을정자목 테크 설치 및 관리 80. 포켓공원조성 및 관리 81. 학교숲, 마을숲 조성 및 관리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녹 색 환 경 과	자연환경	<p>70. 자연환경 보전 관련 업무</p> <p>71. 녹색성장 관련업무 총괄</p> <p>72. 녹색성장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p> <p>73. 녹색성장 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 정비</p> <p>74. 녹색성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p> <p>75. 녹색성장 시책개발 및 추진</p> <p>76. 녹색성장 관련 교육 및 홍보</p> <p>77. 분야별 녹색성장 관련 시책 장려</p> <p>78.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운영·관리</p> <p>79.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수립</p> <p>80.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사항</p> <p>81.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지원</p> <p>82. 탄소포인트제도 추진에 관한 사항</p> <p>83.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에 관한 사항</p> <p>84. 온실가스 감축 대응에 관한 사항</p> <p>85. 그린리더 인력 양성 및 운영</p> <p>86. 온실가스 줄이기 생활실천 운동 전개</p> <p>87. 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p> <p>88. 지방의제 21 추진에 관한 사항</p> <p>89. ISO 14001에 관한 사항</p> <p>90. 생태공원 운영 및 조성사업 추진</p> <p>91. 에코에너지파크 조성 및 운영</p>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건설과	건설 농업기반	1.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2. 소관 국(국토해양부)·공유재산 관리 3.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4. 소규모 건설공사 및 시설물유지관리 5. 건설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6. 새마을 편입부지 등기 7. 재정건의사업 시행 8.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 9. 과내 일반서무 및 예산회계 업무 10. 합천댐 주변지역지원 및 정비사업 11. 건설사업 보상 12. 건설기계 및 조종사 면허 지도·단속 관리 13. 경지정리사업 14. 밭기반정비사업 15.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6. 개간 인가(허가) 17.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8. 한해대책 및 장비유지관리 19.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20.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사업 21. 저수지 유지관리 22. 농업 기반시설정비 및 유지관리 23. 소규모용수개발사업 24. 지표수보강개발사업 25. 준영구논두렁 설치사업 26. 소관 국(농림수산식품부)·공유재산 관리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건설과	하 천	27.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28. 국가 및 지방하천 위임업무	
		29. 하천(소하천)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	
		30. 폐천부지 및 공유수면 관리	
		31.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협의	
		32. 국·공유재산 관리(하천, 소하천)	
		33. 하도개선(준설)사업	
		34. 골재 채취업 등록 및 채취허가(하천골재)	
		35. 기성제 정비사업	
		36. 하천(소하천) 재해예방·복구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7.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38.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39.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40.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의 수립	
		41.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도 로	42. 상급 도로건설에 대한 실시설계 종합검토 추진
			43. 각급 도로망 건설 종합계획 수립 추진
			44.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관리
			45. 지방도 유지관리
			46. 접도구역 관리
			47. 도로표지판 설치 및 사후관리
			48.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관리
			49. 도로굴착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50. 사도관리
			51. 도로관리원 및 장비관리
			52. 지방도, 군도 적치물, 노점상 관리
			53. 과적차량 단속
			54. 위험도로 구조개선
			55.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5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7. 도로파손 및 교통장애물 제거
			58. 기술감리 교육
			59. 제한차량 운행허가
			60. 국책사업 추진관리
			61. 지방도사업 추진관리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도시 건축 축 과	도시계획 도시개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입안 2. 군 관리계획 총괄조정 및 관리 3.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 4.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 관리 5. 제1·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6.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업무 7. 토지정보체계 전산화 8. 도시통계 작성관리 9.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10. 옥외광고물 허가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업무 처리 11.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12. 옥외광고물 허가사항의 안전도 검사 13.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매수신청 접수 및 처리 14. 군계획시설사업 집행계획수립 및 시행 15. 과내 일반사무 및 예산회계 업무 16. 군 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17. 군 계획시설사업 토지수용 및 보상, 소유권이전등기 18. 택지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19. 소도읍 개발사업 시행 20. 도시계획시설 정비 전반 21.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공사분야) 2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3. 자전거타기 교육 및 홍보 24.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25.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 26.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 27.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공사 28.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 29. 자전거 문화행사 개발 및 추진 30. 자전거타기 활성화 시책 시행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도 시 건 축 과	건축사업	31.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시공관리 33. 주택분양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 34. 임대주택 건립 및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35. 공동주택 사후관리 36. 주택관련통계 및 주택행정정보화 시스템 관리 37. 불량주택 및 빈집 정비, 농촌 마을 정비 사업 38. 건축 관련 위원회 관리 및 운영 39.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정비 40. 건축물 조경시설 관리 41.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및 정비 42. 재해주택 관리 및 이주단지 사업 추진 43. 건축물 안전점검 44. 아름다운 건축물 및 친환경건축사업 45. 건축기본정책 계획수립 및 시행 46. 거창읍 도시경관 조성사업 47. 공공디자인계획 수립 및 시행 48. 일반 건축 공사장 및 건축 관계자 관리 49. 농촌 빈집 정보 등 건축정보 센터 운영 50. 10억 이상 건축공사 시공, 감독 및 준공에 관한 업무 51. 10억 미만 건축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에 관한 업무 52. 공공용 건축물 건축협의 53. 빈집리모델링 사업추진 54. 농업인 설계비 지원사업추진 55. 그 밖에 주택 및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건축민원	56. 건축허가에 관한 사무 57. 건축신고에 관한 사무 58. 건축물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59.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관한 사무 60. 건축물철거·멸실에 관한 사무 61. 용도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2.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정정에 관한 사무 63. 건축물대장 말소에 관한 사무 64.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에 관한 사무 65. 건축물 대장 전산화에 관한 사무 66. 농지전용협의, 허가 및 용도변경 승인 67.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68. 건축과 복합민원인으로 접수된 도로점·사용, 배수설비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69.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및 관리 70. 건축과 복합으로 접수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71. 건축관련 통계 작성 및 보고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농 업 축 산 과	농업지원	35.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 관리 업무
		36. 농업인 자녀 학자금 관련 업무
		37. 농가 도우미 지원 업무
		38.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39.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지원업무
		40.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대한 피해 지원
		41. 농촌생활개선 사업의 계획수립 조정, 평가 업무
		42. 농작업 환경개선 업무
		43. 생활개선회 육성 및 품목별 연구회 관련 업무
		44. 농촌 여성 능력 개발 교육
		45. 농촌총각 국제 결혼 지원 업무
		46. 농촌 가정경영 및 소비자 농업 육성
		47. 농촌교육농장 육성
		축산내수면
	49. 축산단체 관리 및 행사지원 업무	
	50. 송아지 생산 기지조성사업 업무	
	51. 가축 개량사업 업무	
	52.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 업무	
	53. 인공수정소 개설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	
	54. 가축시장 지도관리 업무	
	55. 가축통계 조사 업무	
	56. 조사료생산 및 생산 장비, 기반시설 지원 업무	
	57. 사료사업 지원관련 업무	
	58. 초지조성 관련 업무축산업 경쟁력 제고 업무	
	59. 낙농산업 육성 업무	
	60.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 업무	
	61.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62. 수산자원조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업무	
	63. 내수면 어업개발 지원 업무	
	64. 수산종묘 방류에 관한 업무	
65. 내수면어업 인허가 및 수산물 원산지 지도 단속 업무		
66. 축산재해 조사 및 지원 업무		
67. 축산업 등록제 업무		
68. 친환경 축산 직불제 및 축사설치 사업업무		
69. 축산물 생산 이력제 업무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농 업 축 산 과	축산내수면	70. 축산 및 사료작물 시범사업 추진 업무 71. 축산분야 친환경 관련 업무 72. 경관보전 직불제 업무	
	가축위생	73. 가축재해보험 업무	
		74.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업무	
		75.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금질병 방역대책 추진 업무	
		76. 돼지열병 등 양돈질병 예방 및 방역대책 추진 업무	
		77. 소 브루셀라병 검진 및 근절대책 추진 업무	
		78. 소 및 사슴 등의 결핵 검진 관련 업무	
		79. 소 아까바네병 등 모기 매개성 질병 방역 업무	
		80. 꿀벌 기생충 구제사업 추진	
		81. TSE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업무	
		82. 광견병 방역관리 업무	
		83. 가축분뇨처리 대책 추진 및 처리시설 지원 업무	
		84. 가축질병 예방주사 사업 추진 업무	
		85. 가축 살처분 보상금 평가 관리 업무	
		86. 공수의 위축 및 동물병원 등록 관리 업무	
		87.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관련 업무	
		88. 가축질병 예찰 업무	
		89. 축산관계자 방역관리	
		90. 전국일제소독의날 운영 및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업무	
		91.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인허가 및 동물약사 감시 업무	
		92. 축산물영업장 인허가 및 관리 업무	
		93.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 및 축산물 수거검사 업무	
		94. 학교 우유급식 업무	
		95. 유기견 등 동물보호법 관련 업무	
		96. 동물등록제 추진 업무	
		농기계	97. 농기계 순회수리 업무
			98. 농기계 구입지원 및 사후관리 업무
			99. 농기계 기술 교육 업무
			100. 농기계 교육훈련용 장비 관리 업무
			101. 농업 기계화 사업 추진 업무
			102. 농기계 임대 사업 업무
			103. 농기계 보관 창고 관리
			104. 농기계 면세유 관련 업무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항 노 화 산 업 과	항노화산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노화산업 및 사업 총괄 조정 및 추진 2. 항노화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추진 3. 항노화산업 과제 발굴·지원 4. 항노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거창 항노화 힐링 특구 업무 6. 항노화산업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7. 항노화산업 관련 인력 육성
	식량작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산지유통시설 기반 확충사업(식량작물 분야) 9. 농산물 생산이력제 관련업무(식량작물 분야) 10. 쌀 생산조정제 및 사후관리 업무 11. 벼, 전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업무 12. 벼, 전작물 시범·지원 사업 및 영농지도 업무 13. 벼, 콩, 감자, 옥수수, 보리 정부 보급종 생산단지 운영 업무 14.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업무 15. 농촌일손돕기 알선 및 창구운영 업무 16. 농업재해 피해조사·복구 지원 업무 17. 비료생산업, 농약판매업 등록 및 관리 업무 18. 공공비축미 수매, 수급조절 및 가공 등에 관한 업무 19. 정부양곡관리 대행 및 수탁기관 관리 업무 20. 병해충 진단실 및 관찰포 증식포 운영 업무 21. 쌀전업농 단체육성 22. 논 소득기반 다양화, 타 작물재배 사업 업무 23. 친환경 식량작물 업무 24. 항노화 식량작물 생산 업무
	원예특작	<ol style="list-style-type: none"> 25. 원예·특작분야 시범사업 추진 업무 26. 원예·특작 적정생산 계획 및 지도 업무 27. 원예·특작 종자산업법 등록관리 업무 28. 원예 특용작물 실증시험 업무 29. 버섯 재배기술 지원 및 시범사업 추진 업무 30. 잠업 생산 지원 관련 업무 31. 원예·특작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원 업무 32. 원예·특작 특화작목 육성 업무 33. 원예·특작분야 시설 재해대책 업무 34. 오미자 생산기반조성 및 사후관리 업무 35. 원예·특작 기술보급 및 육성 지도 업무 36. 친환경 원예특작 업무 37. 항노화 원예특작물 생산 업무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항 노 화 산 업 과	과 수	38. 과수재배 기술보급 및 적정생산 계획 업무 39. 과수 시범사업 및 지원사업 업무 40. 사과 밀식과원 조성사업 및 운영 업무 41. 사과테마파크 관리운영 및 테마연구 업무 42. 과수분야 신소득작목 개발 육성 보급 및 신품종 적응시험 43. 거창사과발전협의회 및 과수분야 생산자단체 관리업무 44. 사과테마파크 사과나무 분양 및 문자사과 생산 홍보 45. 과수 생육관찰포 및 병해충관찰포 운영조사 46. 거창 사과 딸기 산업특구 업무 47. 과수 병해충 예찰 및 적기방제 등 기술지도 48. 사과이용 체험센터 건립 및 운영 업무 49. 과수 재해보험 및 과수 실태조사 업무 50. 과수분야 돌발병해충 예찰 및 방제 업무 51. 사과테마파크 행사 및 사과데이 행사 업무 52. 탐프루트 시범단지 육성 및 과원관리 IPM사업 업무 53. 사과이용연구소 협력 및 과수분야 경통협사업 업무 54. FTA기금 고품질 과수생산 시설현대화 사업 업무 55. FTA기금 과수 생산기반 지원 업무 56. FTA기금사업 사후관리 및 출하약정 이행 업무 57. 거창 명품사과 홍보 및 사과테마파크 전시관 운영 업무 58. 친환경 과수 업무 59. 항노화 과수 생산 업무 60. 친환경농업육성계획 및 지원 업무 61. 광역친환경단지육성및지원업무 62. 친환경농업지구, 친환경종합단지 조성 업무 63. 유기농벨리, 생태농업단지 조성 업무 64. 친환경농산물생산단지 조성 업무 65.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업무 66. 토종 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업무 67. 친환경비료(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지원 업무 68. 녹비종자 공급 및 활용 지원 업무 69.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 업무 70.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업무 71. 친환경농업분야 시범사업 업무 72. 친환경농업지구 현장컨설팅 지원 업무
	친환경 연구개발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p>항 노 화 산 업 과</p>	<p>친환경 연구개발</p> <p>기술보급</p>	<p>73. 천적생태과학관 운영 업무</p> <p>74. 천적 시범생산 및 공급 업무</p> <p>75.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업무</p> <p>76. 미생물발효제 활용 실증시험 업무</p> <p>77. 축산용생균제 생산 및 실증시험 업무</p> <p>78. 항노화 지역특화품목 연구개발</p> <p>79. 신규작물 기술개발에 관한 업무</p> <p>80. 농업기술 보급</p> <p>81. 항노화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p> <p>82. 실증시험포장 관리 업무</p> <p>83. 꽃옥묘장 관리업무</p> <p>84. 조직배양실 운영 업무</p> <p>85. 종서생산에 관한 업무</p> <p>86. 농약잔류검사에 관한 업무</p> <p>87. 토양정밀 검정에 관한 업무</p>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농 촌 진 흥 과	<p>농촌진흥</p> <p>농촌개발</p> <p>농산수출 유통</p> <p>농산가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맞춤형마을만들기 업무 2. 거창 맞춤형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 3. 마을만들기 관련 DB구축 4. 마을만들기 협의회 운영 5. 농촌현장포럼, 주민 역량강화 교육 6. 매력있는 마을, 함께하는 마을,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7.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8. 맞춤형마을기업 조성과 영농지도 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와 시행, 유지관리 10.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11.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12.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13.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14. 새뜰마을사업 15. 아카데미파크 관리 및 운영 16. 유통·마케팅 고도화 전략 수립 17. 농업관측 및 농산물 가격동향 18.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단 운영 19. 대도시 직판장 운영 20. 농특산물 간이 직판장 설치 지원 21. 농산물 수출 종합대책, 해외시장개척 22. 수출농가·수출업체 육성과 수출활성화 지원 23. 산지유통 종합계획 추진 24. 서북부경남 산지유통센터(APC)운영·지원 25. 산지유통시설 지원 26. 농산물공동브랜드 육성 27. 농산물우수관리(GAP) 육성에 관한사항 28.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29. 통합마케팅 조직과 공선출하조직육성 30. 농산물공동브랜드육성 31. 농업 6차산업화 지원 32. 향토산업 제조·가공 육성 33. 농산물 가공기술개발 34. 농산물 가공산업 지도 교육 35. 벤처농업 육성 36. 농업인 창업지원 37. 농식품 가공활성화사업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농 촌 진 흥 과	농산가공 로컬푸드	38. 향토음식과 농가맛집 육성지원 39. 전통주 육성 40.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제조.가공) 41.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지원센터 운영 42. 농식품 규격화, 표준화 지원 43. 전통발효 식품 육성 등 지원 44. 신기술보급사업(식품가공) 45.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사업 46.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47. 우수외식업 지구 지정관리 48. 무상급식지원 49.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50.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관리 51.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보급 52. 학교식생활교육지원 53. 거창푸드 생산자 조직화 54.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사이버농원 운영 55. 녹색 체험농장 운영 56. 관광농원 지정, 사후관리 57. 농촌 민박지정, 사후관리 58.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 지원 59. 주말 농업인장터 운영지원 60. 도시민농촌유치사업 전반(귀농.귀촌)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보건소	보건행정	1. 보건행정의 기획 및 조정	
		2. 회계 및 예산 운영 관련 업무	
		3.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인사 및 복무지도 관리	
		4. 물품·비품 및 재산관리 업무	
		5. 보건기관 시설물 관리	
		6. 소내 일반서무	
		7.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8. 공중보건 의사 관리 및 인건비 지급	
		9.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10. 지역보건의료계획	
		11. 보건복지부실시계획 수립·시행	
		12. 공용차량 유지관리 업무	
		13. 그 밖에 보건사업과 관련한 업무	
		건강증진	14. 건강도시 사업
	15.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16.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17. 건강생활실천사업(운동, 영양, 비만, 절주)		
	18. 맞춤형 원스톱 헬스케어 사업		
	19. 구강보건사업		
	20.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21.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22.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사업		
	예방의약		23. 법정 및 급·만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4. 기생충 및 위생해충 구제사업
			25. 에이즈, 결핵, 한센병 환자 관리
			26. 방역대책 수립 및 방역소독
			27. 소독업소 신고 및 변경
		28. 방역의약품 및 장비관리	
		29. 성병환자 관리	
		30. 각종질환등에 대한 진단검사	
		31. 의약업소 인·허가 및 지도감독	
		32. 군립노인요양병원 관리	
		33.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설등록(안경업소, 치과기공소등)	
		34. 무허가, 부정의약업자 단속 및 처리	
		35.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대마)관리	
		36.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	
		37. 예방접종사업	
		38. 진단용 방사선 및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업무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보건소	건강지원	39. 치매관리 및 예방사업 40. 치매 의료비 및 검진비 지원사업 41.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 위생용품 지원사업 42. 치매 어르신 배회감지기(GPS) 지원사업 43. 치매상담센터 및 치매상담실 운영 44. 지역사회 건강조사 관련 사업 45. 만성질환 관리사업 46.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47. 노인 실명 예방관리사업 48.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49.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사업 50. 어르신 인공관절 지원사업 51. 저소득층 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사업 52.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 53. 소아암 등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4.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55. 호스피스 및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56. 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사업 57. 정신건강 증진사업 58. 자살예방 관리사업 59. 정신건강증진 센터운영 60. 중독관리 통합지원사업 61.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
	보건민원	62.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관리 63. 방사전실 운영 64. 한방진료실 운영 65. 물리치료실, 재활운동실 운영 66.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67. 민원접수 및 수납 68. 진료실, 영유아검진실 운영 69. 운전면허적성검사 70.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71. 모자보건사업 72.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73.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사업 74. 심장병 무료 검진 사업 75. 저소득층 특수질환 조기검진사업 76. 출산장려사업 77. 건강검진사업(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뇌정밀, 영유아건강검진)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상 하 수 도 사 업 소	하 수 도	35.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 36. 하수관거 정비사업 37.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 38. 배수설비 설치(협의) 39. 하수도 사용 인·허가 40. 합천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41. 거창군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42. 거창·가조하수처리장 위·수탁관리 43. 분뇨처리장 위·수탁관리 및 처리수수료 징수 44.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위·수탁관리 및 설치사업 45. 거창군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46. 상·하수도 GIS관리시스템 운영 47. 하수도관련 민원처리 48. 하수도관련 예산관리 49. 중수도 설치 기술지원 50. 재이용수공급시설 설치 및 관리 51. 소각시설 운영관리 5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체육 청 소년 사업 소	체육정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포츠레저 산업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2. 스포츠 마케팅사업 총괄 3. 전지훈련, 각종 행사 및 대회 유치 4. 소내 일반사무 및 예산회계 업무 5. 체육진흥 종합 기획·조정 6.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7.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8. 체육단체 육성 관리 9.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관리 10. 체육시설업 지도·관리 11. 군민체육대회, 도민·전국체육대회 12. 거창사과마라톤대회 개최 13. 장애인 체육 행사
	체육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4. 스포츠파크 총괄 관리운영 15.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6. 체육시설 대관 및 사용료 부과·징수 17. 위탁 체육시설 관리 18. 시설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운영 19. 실버레포츠타운 조성 20. 군민생활체육공원, 읍민생활공원 관리 21.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관리 감독 22.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관리(건축, 전기, 기계) 23. 그 밖에 스포츠파크 내 각종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청 소 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24. 청소년 업무 전반 25. 청소년 수련시설(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설치·관리·운영 26.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27.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28. 청소년 행사 지원 29. 학교폭력 예방사업 30.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청소년 감시단 운영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총 무 과	복지허브	69. 찾아가는 복지상담 업무 70. 통합사례관리 71. 민관협력사업 연계 7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73. 자원발굴 및 개발 74. 사각지대 발굴 체계 구성 및 운영 75. 복지서비스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개발과	산업경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행정의 종합 시행에 관한 사항 2. 농업단체 지도 육성 3. 농지 보전 및 개량 4. 농지전용신고 수리 5. 농지전용지 사후관리 및 불법·문단 농지전용 단속 6. 농업인 소득 증대 및 부업장려 7. 에너지 관련 업무 추진 8. 양곡수매 9. 식량작물 및 특용작물 생산·지도 10. 농기구 및 농업용 자재 수급 조절 11. 병충해 방제 12. 양잠업무에 관한 사항 13. 가축 밀도살 지도 14. 사료 수급 및 자급 사료 증산 15. 가축방역 및 축산 자금관리 16. 내수면 어업 보호·육성 17. 물가안정대책 생활필수품 수급 조절 18. 국공유림 및 조림지 관리 19. 산림보호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0. 산불 예방 및 진화 21. 그 밖에 과내 다른 분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건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22.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및 추진 23. 농로개설 24. 도로하천 제방 교량의 유지관리 25. 토목공사의 시공 및 유지관리 26. 도로하천 계속 점용허가 27. 도로정비 및 노상 방치물 정리 28. 풍수해 대책 및 재난경보시설 유지·관리 29. 환지 관리 30. 한해대책 및 양수기 관리 31. 농경지 정리 32. 수리 시설물 유지관리 33. 재해·재난 방재업무 추진 34. 간이 상수도 관리 35. 교량조사(도시계획구역 내)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면	총 무 복지지원 (복지허브) 개발 산업경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도·군정 시책 추진 및 홍보에 관한사항 2. 문화재 보호관리 3. 문서수발 통제, 보존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 여론행정 및 동향관리 5. 마을 행정 지도 6. 행정장비 및 행정사무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7. 선거 및 국민투표 8. 자금수급 및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9. 일반사무 및 예산회계 업무 10. 세입세출외 현금 정리 11.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 12. 청사 및 물품출납 관리에 관한 사항 13. 면 종합복지회관 관리 14. 통계조사 15. 공인관리 16.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7. 새마을 지도자 육성 18. 바르게 살기 및 국민운동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9.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20. 지방세 과세대장 관리 21.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및 납부홍보 22. 지방세 신고납부서 접수 및 처리 23.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처리 24. 지방세 세목별 과세 및 납세 증명서 발급 25. 지방세 징수 및 국세 위탁 징수 26. 체납처분 및 체납세 징수에 관한 업무 27.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증빙서류 제출 28. 세외수입 조정·징수 및 체납세 징수 29. 수입증지 판매 30. 공유(도·군)재산관리 및 실태조사(대부계약 체결, 대부료 변상금 조정·징수, 체납액 징수) 31.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면		32. 복지지원(복지허브) 관련 업무 33.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신청 접수 34. 주민복지시책의 수립추진 35. 요 구호자 및 이재민 구호 36. 행려 환자 및 사망자 처리 37. 구호 물자 및 금품의 수집 관리 38. 보훈업무 39. 취약계층 시설 입소 및 보호 40. 매장, 화장, 개장신고 및 개인묘지 설치신고 41.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42. 노인복지 및 여성복지 43. 방역 및 보건에 관한 사항 44. 자원 봉사 업무 45. 주민등록 관리 및 주민전산에 관한 사항 46. 주민등록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47. 민원안내 및 상담 48. 민원서류 수발 및 민원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9. 인감 50. 외국인 등록 관리 51. 가족관계 등록 관리 52. 민방위 대원 편성 및 자원관리 53. 민방위 시설·장비 설치 및 사후관리 54. 어디서나 민원 업무 55.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개발사업 추진 56.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관리 57. 농로개설 58. 도로하천 제방 교량의 유지관리 59. 토목공사의 시공 및 유지관리 60. 도로하천 계속 점용허가 61. 도로정비 및 노상방치물 정리 62. 재해·재난, 산불 등 방재업무 추진 63. 환지관리 64. 한해대책 및 양수기 관리 65. 농경지 정리

실과	사무분장	분 장 사 무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66.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67. 도시계획 시행에 관한 사항 68. 유원지의 유지관리 및 시설물 관리 69.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70.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71. 재해주택 용자금 관리 72. 광고물 업무 73. 소도읍 개발 74. 폐기물 관리 및 지도·단속 75. 개인하수(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76. 공중 화장실 관리 77. 자연보호 78. 자원 재활용 79. 꽃길·공원 등 각종 공원화사업 80. 산업행정의 종합 추진 81. 농업단체 지도 육성 82. 농지 보전 및 개량 83. 농지전용신고 수리 84. 농지 전용지 사후관리 및 불법·무단 농지전용 단속 85. 농민 소득 증대 및 부업장려 86. 상공업 진흥 87. 연료 수급 대책 88. 양곡수매 89. 식량작물 및 특용작물 생산·지도 90. 비료 농약의 수급 조절 91. 농기구 및 농사 자재 수급 조절 92. 병충해 방제 93. 병발조성 및 잠종생산 94. 가축도살 단속 95. 사료 수급 및 자급 사료 증산 96. 축산 자금관리 97. 내수면 어업 보호·육성 98. 물가안정대책 생활 필수품 수급 조절 99. 국공유림 및 조림지 관리 100. 산림보호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의안 번호	2016 ~ 31
----------	-----------

제출연월일	2016. 6. 28.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민선6기 하반기의 신임 군수님의 군정비전 실현을 뒷받침하고, 군정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 조직안정과 여건변화 등에 따른 현행조직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보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부서별 담당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 조정(안 별표)

- 기획감사실: 법무통계+ 규제개혁 ⇒ 규제개혁
- 행정과: 공무원단체 ⇒ 서무
- 창조산업과: (신설)창조산업, 교육진흥, 평생교육 ⇒ 평생학습
(이관폐지)향노화산업, (폐지)창조전략
- 민원봉사과: (신설)지적재조사
- 안전총괄과: 생활민방위+ 안전재난상황실 ⇒ 민방위관제
- 승강기경제과:(신설)전략사업, 기업지원,
승강기밸리 ⇒ 승강기산업
(폐지)사회적기업, 일자리
- 문화관광과:(신설)관광시설
관광 ⇒ 관광진흥, 수승대관리 ⇒ 수승대
- 산림녹지과: 산림조성+ 산지소득 ⇒ 산림조성
(신설)산림휴양
- 녹색환경과: 환경관리 ⇒ 환경정책, 환경정비 ⇒ 자원순환,
녹색성장 ⇒ 자연환경
- 농업축산과: 농기계관리 ⇒ 농기계
- 향노화산업과: (이관신설)향노화산업,
친환경농업 ⇒ 친환경연구개발, 농업기술 ⇒ 기술보급

- 농촌진흥과: 마을정책 ⇒ 농촌진흥, 마케팅 ⇒ 농산수출유통, 식품가공 ⇒ 농산가공, (신설)농촌개발 귀농귀촌+ 로컬푸드 ⇒ 로컬푸드
- 보건소: 방문보건 ⇒ 건강지원, 진료 ⇒ 보건민원
- 문화센터: 복합문화 ⇒ 박물관
- 거창읍: 주민봉사과 ⇒ 총무과, 주민생활지원 ⇒ 복지지원, (신설)복지허브
- 주상, 웅양, 고제, 북상, 마리, 남상, 남하, 신원, 가북면 : 주민생활지원 ⇒ 복지지원
- 위천면, 가조면: 주민생활지원 ⇒ 복지허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8조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 창 군 수 양 등 인

2016년 7월 01일

거창군 훈령 제397호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의안 번호	2016 ~ 33
----------	-----------

제출연월일	2016. 6. 28.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행정기구 개편과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별 직급별 정원 조정

부서명	정원		직 급 별									
			6급		7급		8급		9급		기타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기획감사실	23	24	9	8	8	9	4	4	1	2		
주민생활지원실	32	28	9	9	12	11	5	4	5	3		
창조산업과	15	14	5	5	4	4	4	3	1	1		
재 무 과	30	28	9	11	10	7	8	7	2	2		
민원봉사과	23	23	6	6	6	6	6	6	4	4		
안전총괄과	26	21	6	5	10	7	6	6	3	2		
승강기경제과	17	17	7	6	6	5	1	3	2	2		
문화관광과	21	21	7	7	8	4	4	5	1	3	0	1
산림녹지과	17	18	6	6	4	5	5	5	1	1		
녹색환경과	18	18	5	6	5	5	3	3	4	3		
건 설 과	20	17	5	5	7	5	4	4	3	2		
도시건축과	25	24	6	6	9	10	9	6	0	1		
농업기술센터	65	70	10	9	12	17	7	7	4	6	28	27
농업축산과	27	24	6	3	5	6	4	3	4	3	6	7
향노화산업과	21	25	2	2	2	5	2	3	0	1	14	13
농촌진흥과	17	21	2	4	5	6	1	1	0	2	8	7
보 건 소	63	63	13	12	21	21	26	26	1	2		

부서명	정원		직 급 별									
			6급		7급		8급		9급		기타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문화센터	10	11	1	2	4	4	1	2	2	2	1	0
상하수도사업소	22	23	4	4	7	8	6	6	3	3	1	1
체육청소년 사업소	11	13	3	3	2	4	4	4	1	1		
거창읍	37	40	9	10	9	10	9	9	9	10		
위천면	13	14	4	4	3	4	3	3	2	2		
가조면	16	17	4	4	4	4	4	5	3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